

예비심사보고서

【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의안 번호	454 455
----------	------------

2024. 6. 14.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 5. 31. / 남양주시장
- 나. 회부일자 : 2024. 5. 31.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6. 14.

2. 심사결과 : 『원안가결』

3. 주요내용

I. 세입·세출 결산

1. 회계현황

2023년도의 회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분되어 운영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일반회계 1개, 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타특별회계 9개, 기금 18개가 설치·운영되었음

2. 세입·세출결산

가. 세입·세출 결산 요약

우리시 2023 회계연도 총세입은 2,844,567백만원, 총세출은 2,268,896백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575,671백만원임

<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일반회계	세 입	1,897,474	2,321,120	2,379,998	2,505,015	2,417,333
	세 출	1,504,683	1,993,239	2,004,656	2,049,089	2,051,111
	결산상잉여금	392,791	327,881	375,343	455,925	366,222
특별회계	세 입	205,277	231,085	224,289	203,900	208,325
	세 출	65,979	147,942	112,706	84,583	73,162
	결산상잉여금	139,298	83,144	111,583	119,316	135,163
공기업 특별회계	세 입	241,202	229,016	232,849	217,567	218,909
	세 출	145,746	145,151	148,846	142,759	144,623
	결산상잉여금	95,456	83,865	84,003	74,808	74,286
총 계	세 입	2,343,953	2,781,221	2,837,136	2,926,482	2,844,567
	세 출	1,716,409	2,286,332	2,266,208	2,276,432	2,268,896
	결산상잉여금	627,545	494,890	570,928	650,050	575,671

<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5년 평균 증가율	
세입(A)	2,343,953	2,781,221	2,837,136	2,926,482	2,844,567	5.0	
세출(B)	1,716,409	2,286,332	2,266,208	2,276,432	2,268,896	7.2	
잉여금 (A-B)	소 계	627,545	494,890	570,928	650,050	575,671	-2.1
	이 월 금	348,314	238,156	329,072	368,672	359,164	0.8
	보 조 금 실제반납금	16,077	19,422	27,581	38,434	22,627	8.9
	순 세 계 잉 여 금	263,155	237,312	214,276	242,944	193,880	7.4

나. 세입·세출 결산 분석

(1)세입결산

2023회계연도 세입은 2,844,56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1,915백만원(2.8%) 이 감소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보조금 등 이전 수입(48.1%), 지방세 등 자체수입(27.5%),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24.4%)임

<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전년대비(%)	2023	전년대비(%)
계	2,837,136	2,926,482	103.15	2,844,567	97.20
자체수입	761,084	782,786	102.85	781,996	99.90
지방세	478,038	541,153	113.2	491,940	90.91
세외수입	283,046	241,633	85.37	290,056	120.03
이전수입	1,515,672	1,520,809	100.34	1,367,687	89.93
지방교부세	319,906	376,735	117.76	288,963	76.70
조정교부금 등	285,580	244,878	85.75	200,201	81.76
보 조 금	910,185	899,197	98.79	878,523	97.7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60,380	622,886	111.15	694,884	111.56

(2)세출결산

세출은 2,268,89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535백만원(0.33%)이 감소하였으며, 세출결산 중 주요 지출 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957,787백만원(42.2%), 교통 및 물류 238,631백만원(10.51%), 환경분야 146,096백만원(6.43%)이고, 전년대비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문화 및 관광(40.53%), 농림및해양수산(10.97%), 환경(10.48%) 분야임.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전년대비(%)	2023	전년대비(%)
계	2,266,208	2,276,432	100.45	2,268,896	99.67
일반회계	2,004,656	2,049,089	102.22	2,051,111	100.10
일반공공행정	121,422	126,145	103.89	111,020	88.01
공공질서및안전	41,109	23,291	56.66	14,887	63.92
교육	34,399	44,892	130.5	46,347	103.24
문화및관광	72,902	75,943	104.17	106,722	140.53
환경	117,549	132,235	112.49	146,096	110.48
사회복지	973,606	948,659	97.44	957,787	100.96
보건	43,697	55,348	126.66	14,872	86.49
농림해양수산	37,437	39,136	104.54	43,429	110.9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5,478	39,782	156.14	38,865	97.70
교통및물류	269,187	249,351	92.63	238,631	95.70
국토및지역개발	89,035	124,528	139.86	97,675	78.44
기타	178,834	189,779	106.12	201,780	106.32
특별회계	261,552	227,342	86.92	217,785	95.80
공기업특별회계	148,846	142,759	95.91	144,6238	101.31
기타특별회계	112,706	84,583	75.05	73,162	86.50

<2023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포함) 결산현황>

(단위:백만원)

회 계 명	예산현액	세 입 결산액	세 출 결산액	결 산 상 잉 여 금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 조 금 반 납 금	순세계 잉여금
계	2,839,435	2,844,567	2,268,896	575,671	72,345	21,298	265,521	22,627	193,880
일 반 회 계	2,413,078	2,417,333	2,051,111	366,222	60,896	15,207	180,487	19,579	90,053
공 기 업 특 별 회 계	223,917	218,909	144,623	74,286	3,442	5,341	23,789	259	41,456
수 도 사 업	95,424	92,560	55,202	37,358	318	1,676	13,580	211	21,573
하수도사업	128,493	126,349	89,421	36,928	3,124	3,665	10,209	47	19,883
기 타 특 별 회 계	202,440	208,325	73,162	135,163	8,007	750	61,246	2,789	62,371
의 료 급 여 사 업	7,195	7,223	7,135	88	-	-	-	-	88
발전소주변 지 원 사 업	389	287	279	8	-	-	-	8	0.5
수 질 개 선	36,013	36,060	29,043	7,017	461	750	-	2,073	3,733
공 유 재 산 리 관	45,429	49,602	7,616	41,986	7,000	-	19,751	-	15,235
교 통 사 업	40,399	40,992	12,439	28,553	476	-	22,079	-	5,998
도 시 재 정 비 촉 진	2	2	-	2	-	-	-	-	2
지 하 수 관 리	1,470	1,458	171	1,287	-	-	-	-	1,287
폐 기 물 처 리 시 설	26,268	26,141	2,780	23,361	-	-	13,401	-	9,960
개 발 제 한 구 역 주 민 지 원 사 업	45,275	46,560	13,699	32,861	70	-	6,015	708	26,068

3. 이월사업비 및 예비비

가. 이월사업비

(1)일반회계 : 401건/ 256,929,160,067원 (명시·사고이월 중복 7건)

○ 명시이월 : 135건 / 60,896,029,940원

○ 사고이월 : 56건 / 15,546,398,910원

*자금없는 이월: 339,000,000원

○ 계속비이월 : 217건 / 180,486,731,217원

(2)기타특별회계 : 38건 / 70,002,669,523원

○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 6건 / 1,210,806,550원 (명시·사고이월 중복 1건)

- 명시이월 : 2건 / 460,510,000원

- 사고이월 : 5건 / 750,296,550원

○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 5건 / 26,750,545,100원

- 명시이월 : 1건 / 7,000,000,000원

- 계속비이월 : 4건 / 19,750,545,100원

○ 교통사업특별회계 : 14건 / 22,555,075,590원

- 명시이월 : 3건 / 475,971,000원

- 계속비이월 : 11건 / 22,079,104,590원

○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 5건 / 13,401,230,600원

- 계속비이월 : 5건 / 13,401,230,600원

○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 : 8건 / 6,085,011,683원

- 명시이월 : 2건 / 70,000,000원

- 계속비이월 : 6건 / 6,015,011,683원

나. 예비비

(1)일반회계 : 15건/ 4,651,788,310원 지출

○ 202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3,233,863,000원으로서 15건 5,188,03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651,788,310원을 지출하고 195,02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341,219,69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음

(단위:원)

지출 부서	예비비 지출사유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
15건		5,188,036,000	4,651,788,310	195,028,000	341,219,690
자치행정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잰버리 지원	67,400,000	-	-	67,400,000
복지행정과	동절기 에너지빈곤층 지원을 위한 긴급 난방비 지원	1,348,800,000	1,302,300,000	-	46,500,000
노인복지과	동절기 에너지빈곤층 지원을 위한 긴급 난방비 지원	98,600,000	92,038,880	-	6,561,120
장애인복지과	동절기 에너지빈곤층 지원을 위한 긴급 난방비 지원	75,000,000	65,500,000	-	9,500,000
여성이동과	동절기 에너지빈곤층 지원을 위한 긴급 난방비 지원	43,600,000	41,700,000	-	1,900,000
소상공인과	2023. 6. 27. ~ 7. 27.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 긴급 복구	7,000,000	7,000,000	-	-
소상공인과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1,800,000,000	1,600,000,000	-	200,000,000
체육과	의정부지방법원 2022머3259 부당이득금 조정결정에 따른 토지보상금 지급	425,828,000	425,828,000	-	-
생태하천과	2023. 6. 27. ~ 7. 27.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 긴급 복구	195,028,000	-	195,028,000	-

지출 부서	예비비 지출사유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
건축과	2023. 6. 27. ~ 7. 27.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 긴급 복구	12,000,000	12,000,000	-	-
도로건설과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금 지급	826,810,000	826,201,510	-	608,490
농업기술과	과수 저온피해로 인하여 과수농가의 재해 응급 복구를 위한 작물보호제, 영양제 등 공급	126,767,000	126,766,960	-	40
농업기술과	2023. 6. 27. ~ 7. 27.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 긴급 복구	3,777,000	1,027,000	-	2,750,000
관리운영과	부당이득금(배상금 및 월임료) 지급	109,696,000	106,011,850	-	3,684,150
도로관리과	손해배상 판결결과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	47,730,000	45,414,110	-	2,315,890

(2)기타특별회계 :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및 지출잔액 모두 미 발생

4.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지방재정법」 제47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2023회계 연도 기간중에 예산을 이용·전용·이체 사용함

가. 예산이용 : 없음

나. 예산전용 : 13건 / 196백만원

(1) 일반회계 : 12건 / 184백만원

(2) 기타특별회계 : 1건 / 13백만원

□ 일반회계

(단위: 원)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총 12건			2,538,597,000	184,050,000	184,050,000	
의회사무국	청사환경조성	201-02 공공운영비	50,000,000	5,000,000	-	의회홈페이지 서버 스토리지 장애로 인한 하드디스크 교체 및 데이터 손실 복구 비용
	의회 의정홍보	201-02 공공운영비	33,703,000	-	5,000,000	
일자리 정책과	마을기업 육성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0,000	35,000,000	-	마을기업 육성지원 시행지침에 의거한 '자산취득비' 편성에 따른 '민간경상사업 보조'의 일부를 '민간 자본사업보조'로 [예산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 하고자 함.
	마을기업 육성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	35,000,000	
자원순환과	쓰레기 20%줄이기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45,000,000	3,840,000	-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예산 전용
	쓰레기 20%줄이기 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9,790,000	-	3,840,000	
생태하천과	북한강 수상레저 공모사업	201-03 행사운영비	160,000,000	80,000,000	-	공모사업 사업계획 확정에 따른 예산 변경 진행 (문체부 지시사항)
	북한강 수상레저 공모사업	401-04 행사관련시설비	-	-	80,000,000	
생태하천과	지방하천 및 소하천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122,712,000	5,000,000	-	항소 포기 및 판결 확정(2023.1.11.)에 따른 배상금 지급
	지방하천 및 소하천 운영	305-01 배상금등	-	-	5,000,000	
생태하천과	청정 계곡·하천 유지 관리 공동체 위탁	307-05 민간위탁금	592,814,000	1,050,000	-	심의위원회 수당 지급
	청정 계곡·하천 유지 관리 공동체 위탁	201-01 사무관리비	-	-	1,050,000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대중교통과	대중교통 행정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0,620,000	1,400,000	-	수요응답형 버스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수요응답형 버스 (DRT)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	1,400,000	
대중교통과	전세버스 활용 증 회운행 지원사업	307-09 운수업계보조금	780,860,000	12,000,000	-	경기사내버스 파업 예정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긴급히 전세버스를 임차하기 위한 전용요청
	대중교통 행정지원	201-01 사무관리비	9,220,000	-	12,000,000	
보건정책과	자체방역 및 감염 병관리사업	201-02 공공운영비	42,165,000	1,760,000	-	해충 기피제 분사기 구입을 위한 예산 전용
	자체방역 및 감염 병관리사업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	1,760,000	
보건정책과	청사관리	201-02 공공운영비	257,179,000	21,000,000	-	보건소 환경개선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청사관리 예산 중 공공운영비 일부를 시설비로 전용하여 집행하고자 함
	청사관리	401-01 시설비	109,560,000	-	21,000,000	
농축산 지원과	가축 사육장비 지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30,000,000	15,000,000	-	소 럽피스킨병 예방과 동물보호센터 내 전염병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동물보호센터와 거점소독장소의 원활한 물 공급을 위한 긴급 관정 공사
	동물 보호 센터 관리	401-01 시설비	29,000,000	-	15,000,000	
평내동	청사 유지관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33,264,000	3,000,000	-	신규아파트 입주로 인한 다수의 통반장수당 지급건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연내 집행이 필요한 상황임
	통·반장활동 지원	301-07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42,710,000	-	3,000,000	

□ 특별회계

(단위:원)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총 1건			44,730,000	12,950,000	12,950,000	
건축과 (개발제한 구역주민 지원사업 특별회계)	개발제한구역 관리	405-01 자산및물품취 득비	15,000,000	12,950,000	-	자산취득비를 안내 표지판 및 경계표석 정비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29,730,000	-	12,950,000	사무관리비로 예산편성 및 집행하기 위함

다. 예산 이체

○ 일반회계 : 170건 / 67,853,750,000원

- 2023년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변경 및 업무이관 등에 따른 사무
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170건
67,853,750,000원을 이체함

○ 특별회계 : 예산이체 없음

5. 채무부담행위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도 채무부담행위 결산 결과 해당없음

II. 기금결산

○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18종으로서

-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은 238,615백만원이고
- 2023년도 조성액은 140,601백만원이며 6,142백만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말 조성액 373,074백만원임

(단위:원)

기금명 \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조성액	사용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238,615,808,440	140,601,560,572	6,142,720,570	373,074,648,442
재난관리기금	44,395,697,809	4,485,219,930	159,928,650	48,720,989,089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41,825,208,630	105,276,091,570	760,622,090	146,340,678,110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3,024,632,700	1,075,024,760	-	4,099,657,460
남양주시 고향사랑기금	-	79,704,410	-	79,704,410
신청사건립기금	45,225,140,530	20,442,611,440	-	65,667,751,970
남양주시자활기금	2,159,326,598	93,433,650	75,909,600	2,176,850,648
노인복지기금	2,065,169,674	36,903,410	44,900,000	2,057,173,084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17,069,766,470	1,077,119,880	-	18,146,886,350
양성평등기금	2,120,304,279	37,979,236	41,284,000	2,116,999,515
남양주시장학기금	8,165,946,730	320,897,789	299,524,000	8,187,320,519
체육진흥기금	6,156,026,560	108,509,049	97,747,420	6,166,788,189
중소기업육성기금	22,044,775,662	3,102,682,280	356,786,910	24,790,671,032
식품진흥기금	610,471,710	316,603,020	255,681,700	671,393,030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9,831,362,470	503,625,042	705,500,000	9,629,487,512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9,779,511,983	2,139,109,736	1,798,783,000	10,119,838,719
옥외광고발전기금	1,875,526,175	387,671,250	428,821,330	1,834,376,095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9,438,438,380	571,118,930	187,231,870	19,822,325,440
농업특산품육성기금	2,828,502,080	547,255,190	930,000,000	2,445,757,270

Ⅲ. 재무제표 결산

1.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

○ 2023회계연도의 남양주시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 정 상 태 표]

(단위:백만원, %)

구 분	2023		2022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유동자산	845,454	9.50	922,111	10.53
투자자산	207,166	2.33	139,126	1.59
일반유형자산	522,946	5.87	521,081	5.95
주민편의시설	1,801,781	20.24	1,774,265	20.25
사회기반시설	5,493,777	61.70	5,371,256	61.31
기타비유동자산	32,740	0.36	33,168	0.37
자산총계	8,903,864	100.00	8,761,007	100.00
유동부채	29,459	63.55	43,232	73.68
장기차입부채	0	0.00	0	0.00
기타비유동부채	16,898	36.45	15,440	26.32
부채총계	46,357	100.00	58,672	100.00
고정순자산	7,851,151	88.64	7,699,624	88.48
특정순자산	235,602	2.66	200,997	2.31
일반순자산	770,754	8.70	801,714	9.21
순자산총계	8,857,507	100.00	8,702,335	100.00
부채및순자산총계	8,903,864	-	8,761,007	-

▶ 2023회계연도 말 남양주시의 자산은 8,903,864백만원으로 전년도 8,761,007백만원보다 142,857백만원(1.63%)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부채는 46,357백만원으로 전년도 58,672백만원보다 12,315백만원 (20.99%) 감소하였습니다.

[재 정 운 영 표(기능별)]

(단위:백만원)

구 분	2023					2022				
	총원가	사업 수익	순원가	내부 거래	계	총원가	사업 수익	순원가	내부 거래	계
I.사업순원가	1,799,911	945,938	853,973	0	853,973	1,738,630	953,771	784,859	0	784,859
II.관리운영비	0	0	288,652	(67,901)	220,751	0	0	321,419	(113,876)	207,543
III.비배분비용	0	0	52,576	(1,155)	51,421	0	0	53,452	(1,217)	52,235
IV.비배분수익	0	0	74,845	(1,155)	73,690	0	0	57,253	(1,217)	56,036
V.재정운영순원가 (I+II+III-IV)	0	0	1,120,356	(67,901)	1,052,455	0	0	1,102,477	(113,876)	988,601
VI.일반수익	0	0	1,177,603	(67,901)	1,109,702	0	0	1,376,112	(113,876)	1,262,236
VII.재정운영결과 (V-VI)	0	0	(57,247)	0	(57,247)	0	0	(273,635)	0	(273,635)

▶ 2023회계연도 남양주시의 사업순원가는 853,973백만원이고 관리운영비(220,751백만원), 비배분비용(51,421백만원) 및 비배분수익(73,690백만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1,052,455백만원입니다.

[재 정 운 영 표(성질별)]

(단위:백만원)

구 분	2023		2022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인건비	238,490	11.51	226,467	11.33
운영비	595,571	28.74	552,481	27.65
정부간이전비용	73,010	3.52	76,441	3.83
민간등이전비용	1,051,087	50.73	1,029,960	51.54
기타비용	113,925	5.50	113,059	5.65
비용총계	2,072,083	100.00	1,998,408	100.00
자체조달수익	745,384	35.01	762,590	33.56
정부간이전수익	1,376,776	64.66	1,499,974	66.02
기타수익	7,170	0.33	9,479	0.42
수익총계	2,129,330	100.00	2,272,043	100.00
재정운영결과	(57,247)	-	(273,635)	-

▶ 또한 2023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비용은 인건비 238,490백만(11.51%), 운영비 595,571백만원(28.74%), 정부간이전비용 73,010백만원(3.52%), 민간 등 이전비용 1,051,087백만원(50.73%), 기타비용 113,925백만원(5.50%)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745,384백만원(35.01%)이고, 정부간이전수익 1,376,776백만원(64.66%), 기타수익 7,170백만원(0.33%)으로 정부간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총비용은 2,072,083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73,675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총수익은 2,129,330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42,713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받은 수익은 1,376,776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23,198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 2024회계연도 남양주시의 운영차액(수익-비용)은 57,247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216,388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2. 채권 현재액

○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0,288,896,554원에서 당해연도에 1,990,752,260원이 발생하고 947,086,370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332,562,444원이 관리되고 있음

(단위:원)

회계별 /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10,288,896,554	1,990,752,260	947,086,370	11,332,562,444
일반회계	7,470,691,560	176,404,000	329,015,560	7,318,080,000
남양주시자활기금	429,657,204	11,179,380	74,901,930	365,934,654
농업특산품육성기금	2,388,547,790	1,803,168,880	543,168,880	3,648,547,790

3. 채무결산

○ 시에서 상환하여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0원에서 당해연도에 0원이 발생·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 0원이 관리되고 있음

IV. 성과보고서 결산

당해 회계연도의 ‘상상 더 이상 남양주’ 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슈퍼성장시대 첨단산업 허브도시 조성·시민시장시대 진심소통 행정혁신·실용 통합시대 목표달성 거버넌스 구축’ 이라는 시정방침을 세우고
전략목표(20개), 정책사업목표(124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음

또한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20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음

(단위: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전략 목표수	정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계	20	124	203	29	160	14
의회사무국	1	1	2	0	2	0
미래전략관	1	2	2	0	2	0
종합민원담당관	1	2	4	2	2	0
홍보기획관	1	1	3	2	1	0
법무담당관	1	1	2	0	2	0
감사관	1	1	2	0	2	0
시민안전관	1	3	8	2	6	0

실국명	성과목표					
	전략 목표수	정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기획조정실	1	15	22	3	19	0
복지국	1	15	23	1	21	1
문화교육국	1	15	20	4	13	3
산업경제국	1	11	18	4	12	2
환경국	1	14	26	2	22	2
도시국	1	13	18	1	17	0
교통국	1	8	15	3	12	0
남양주보건소	1	5	8	0	6	2
남양주풍양보건소	1	2	4	1	3	0
농업기술센터	1	5	12	0	10	2
상하수도관리센터	1	1	1	0	1	0
평생학습원	1	3	5	3	2	0
도시관리사업소	1	6	8	1	5	2
외부조안행정복지센터	0	0	0	0	0	0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0	0	0	0	0	0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0	0	0	0	0	0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	0	0	0	0	0	0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0	0	0	0	0	0
다산행정복지센터	0	0	0	0	0	0
별내행정복지센터	0	0	0	0	0	0
별내행정복지센터	0	0	0	0	0	0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0	0	0	0	0	0
읍면동	0	0	0	0	0	0

※ 성과달성도는 전체 지표수 대비 비율로 표시함.

V.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재액 결산

1.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2023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 토지	18,862건	16,603,034㎡	4,117,468,169,277원
· 건물	373건	448,125㎡	668,400,807,658원
· 입목죽	657,050건		10,115,452,599원
· 공작물	19,840건		886,401,733,947원
· 선박 등	178건		285,008,681,220원으로

▶ 총 5,967,394,844,701원 상당이며, 이를 용도로 구분하여 결산하면 행정재산은 5,647,504,725,253원, 일반재산은 119,977,040,368원, 건설중인재산은 199,913,079,080원임

2. 물품증감 및 현재액

○ 전년도말 물품 보유현황은 3,672개 34,110,546,398원으로 당해연도에 신규 취득 및 관리전환 등으로 176개 1,726,832,443원이 증가하였으며, 160개 1,008,495,701원이 매각 및 폐기처분되어 당해연도말 현재 3,688개 34,828,883,140원의 물품이 관리되고 있음

(단위:개, 원)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3,672	34,110,546,398	176	1,726,832,443	160	1,008,495,701	3,688	34,828,883,140

Ⅶ. 심사 시 고려사항

○ 결산검사위원 개선·권고사항 목록

구분	제 목	해 당 부 서
1	보조금 교부차액 관리 철저	여성아동과 농업기술과 농축산지원과
2	예산이체 유형별 동일한 사유 작성 권고	예산과
3	성과지표(측정산식)의 합리적인 설정 권고	문화예술과 체육과
4	정약용 유적지 관리 운영 사업 집행잔액 사유 부적정	문화관광과
5	별내동 체육공원 개선사업 예산 불용 부적정	체육과
6	수사골 마을안길 확장공사 노무비 집행 부적정	도로건설과
7	이월액 최소화 노력	예산과
8	마석우천(복개구간) 그린웨이 조성사업 행정절차 이행 철저	생태하천과
9	학습등대 프로그램 운영 미흡	미래교육과
10	예산전용의 최소화 운영 권고	풍양 보건행정과
11	계속비 이월예산 집행관리 철저	노인복지과 도로관리과

구분	제 목	해 당 부 서
12	천마산 군립공원 공원계획 예산 집행 부적정	휴양시설관리과
13	지역별 공원 관리 사업 예산 집행 철저	공원관리과
14	농민기본소득 지원 효율적 집행 방안 마련	농생명정책과
15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예산책정 과다	건축관리과
16	특별회계 투자수익률 제고방안 마련	재산관리과 환경정책과 건축관리과
17	예산편성 시 세부사업명 수정 권고	자원순환과
18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 집행 철저	환경정책과
19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 정산 철저	농축산지원과
20	세금계산서, 계산서 합계표 작성 및 제출 철저	재산관리과
21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계획 마련	정책기획과
22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자금 관리 효율성 제고	자원순환과

VII. 종합의견

1. 결산검사위원 총평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남양주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2024년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 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수입과 지출을 세입과 세출로서 예산에 편성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예측 가능한 세입의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의 경비를 충당하여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활용하여야 합니다.

- 결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1년 동안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으로써 예산으로 지출한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지역 발전의 기여도 등을 분석·평가하는데 기초적인 자료가 됩니다.

- 2023회계연도 남양주시 결산검사는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성과 보고서를 기초로 계산의 과오여부,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 결산검사 결과, 남양주시의 2023년도 총 예산규모는 2,839,435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세입결산액(2,844,567백만원)의 비율은 100.2%, 예산현액 대비 세출결산액(2,268,896백만원)의 비율은 79.9%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93,880백만원(예산현액 대비 6.8%)으로 확인됩니다.
- 전년 대비 세입결산액이 2.8% 감소하고 세출결산액도 0.3% 감소하였으나, 순자산은 1.8% 증가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지하는 추세입니다.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지출액 2,051,111백만원 중 사회복지분야가 957,787백만원(46.7%)으로 지출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교통 및 물류분야가 238,631백만원(11.6%), 기타 201,780백만원(9.8%)순입니다.
- 이번 2023회계연도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 운영결산을 보면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02,440백만원, 세입결산액 208,325백만원, 세출결산액 73,162백만원(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36.1%)이며, 기금의 경우 조성액(전년도말 현재액+현년도 조성액) 379,217백만원, 사용액 6,143백만원(조성액 대비 사용비율 1.6%)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 2023년에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국가적인 세수 결손이 발생하였으며, 보조금, 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세입재원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남양주시의 경우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더욱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결산 시마다 강조해 온 사항으로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은 물론 법률상 저촉 여부 및 행정 절차 이행, 주민 의견 수렴 등의 면밀한 계획 수립을 통해 중간에 사업이 변경되어 예산을 이월하거나 장기간 사업이 중단되어 불용액 발생을 야기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 입니다.
- 남양주시는 이번 결산검사 결과에서 제시된 개선 및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집행하기 바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및 회계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전재정의 기틀을 다져야 할 것입니다.

2. 전문위원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 규정에 의거 실시한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의 총평과 개선 권고사항을 참고하고 특히 2023회계연도에는 전년대비 세입결산액이 2.8%감소하였는데 이는 2019회계연도 이후 처음 발생한 사항임
- 주요 원인은 국고보조금 감소로 판단되지만 이와 같이 향후 큰 폭의 유동성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 등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임
- 또한 사업계획이 자주 바뀌어 예산 낭비 등을 초래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 됨에 따라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치 상황 등에 따라 수시로 바뀌지 않도록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심사시 주요의견

-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1,938억 8천만원이 발생됨. 외면적으로 볼 때는 여유 재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나 회계연도 중 추경 예산을 통해 사업별 예산을 조정하였음에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되고 있어 효율적인 재정운명을 통해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됨.
-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6종으로 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다소 저조한 편으로 조성된 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기금 조성의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며, 기금 관리 시 수익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여유자금 운용 수입을 극대화하고 계획적으로 기금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주요 투자사업 추진 시 예산 책정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 효과, 사업 실행 가능성, 예상되는 비용 등을 신중하게 분석하여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
-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재정 건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등 현재의 어려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혁신적인 재정 전략과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

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

- 제35조(결산)** ①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
- ②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 연도의 사업보고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